

2021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I 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051호, 「**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**」은 '20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 .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

1. 기금개요

- **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**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이 설치한 기금(이하 '공제기금' 이라 함)으로,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(이하 '공제회'라 함)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·운용하는 기금임
- 동 기금은 법제처 법령해석 및 타 시·도 교육청의 법령해석 의뢰에 따르면 관련 법령상의 기금에 해당되어 의회의 심의·의결사항인 바, '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임
- '21년도 조성규모는 63억 9,300만원으로 금년도(73억 9,400만원)보다 △13.5%, △10억 100만원 감소한 규모로 제출됨

〈표 2-1〉 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백만원, %)

기 금 명	2020년도말 조 성 액 (A)	2021년도기금운용계획		2021년도말 조 성 액 (B=A+㉠-㉡)	증 감 (C=B-A)	증감률 (C/A)
		수 입 ㉠	지 출 ㉡			
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	7,394	7,044	8,045	6,393	△1,001	△13.5

○ '21년도 기금수지총액은 144억 3,800만원으로 '20년도(141억 100만원)보다 2.4%, 3억 3,600만원 증가한 규모임

〈표 2-2〉 기금 수지 총괄

(단위 : 백만원, %)

수 입 계 획					지 출 계 획				
항 목	'21년 수입액	'20년 수입액	증 감 비율		항 목	'21년 지출액	'20년 지출액	증 감 비율	
합 계	14,438	14,101	336	2.4	합 계	14,438	14,101	336	2.4
기부금	-	-	-	-	비용자성 사업비	6,439	8,045	△1,605	△20.0
예치금 회수	7,394	6,639	754	11.4	인력 운영비	1,269	1,291	△22	△1.7
이지수입	27	104	△77	△74.0	기본경비	336	375	△39	△10.4
기 타	7,017	7,357	△340	△4.6	예치금	6,393	4,389	2,003	45.6

2. 검토내용

(1) 존속기한

○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,

- 동 기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으로 존속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

(2) 기금 수지현황

1) 기금 수입계획

- 수입계획은 144억 3,800만원으로 예치금회수('20년도말 기금조성액) 73억 9,400만원을 포함하여 기타수입 70억 1,700만원과 이자수입금 2,700만원으로 계획됨

〈표 2-3〉 기금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, %)

항 목	세 부 내 역	2021년도		2020년도	증 감	증감률
		금 액	구성비			
합	계	14,438	100.0	14,101	336	2.4
전 입 금	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	-	-	-	-	-
기 타 이전수입	소 계	-	-	-	-	-
	교육청교육금고	-	-	-	-	-
	교육청판결금정산	-	-	-	-	-
	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 및 심리치료지원금	-	-	-	-	-
예치금회수	소 계	7,394	51.2	6,639	754	11.4
	사무국임차보증금	248	1.7	248	-	-
	공제사업이월금	5,643	39.1	4,900	743	15.2
	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금이월금	140	1.0	86	53	61.6
	학교폭력피해지원금이월금	1,362	9.4	1,404	△41	△2.9
이자수입	예금이자수입	27	0.2	104	△77	△74.0
기 타수입	소 계	7,017	48.6	7,357	△340	△4.6
	학교안전공제료	6,753	46.8	6,938	△185	△2.7
	교육활동참여자공제료	30	0.2	24	6	25.0
	소방사업수익	120	0.8	290	△170	△58.6
	학교폭력구상금회수	93	0.6	94	△1	△1.1
	법인세환급금	20	0.1	9	11	122.2

○ **학교안전공제료**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의무가입자인 학교장이 납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

-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공제 금액 산정기준에 학교안전사고 발생추이 등을 고려하여 '21년도 공제료 단가를 결정하고 있음

■ '21년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는 교육부 고시금액보다 10% 인상된 6,958원(평균)으로 금년도 공제료 단가와 동일하게 산정된 것으로 확인됨

〈표 2-4〉 2021년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

(단위 : 원, %)

구	분	유	초	중	고	평균단가
2021년도	공제회계획(A)	2,530	4,400	9,350	11,550	6,958
	교육부고시(B)	2,300	4,000	8,500	10,500	6,325
2020년도	공제회단가(C)	2,530	4,400	9,350	11,550	6,958
교육부 고시금액 대비 공제회 계획 증감률 {D=(A-B)/B}		10.0	10.0	10.0	10.0	10.0
전년도 대비 공제료 증 감 률		0.0	0.0	0.0	0.0	0.0

- '21년도 공제료 수입(67억 5,300만원)의 경우, 학생 수가 감소(△42,476명)되고 공제료 단가가 동결됨에 따라 '20년도(69억 3,800만원) 대비 △2.7%, △1억 8,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

〈표 2-5〉 공제료 수입 및 학생수 증감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, 명)

연 도	당해연도 수입(A)		당해연도 공제료 수입(B)			학생 수(산출내역 기준)		공제료 단가 평균(원)	
	전년대비 증 감		구성비 (B/A)	전년대비 증 감		전년대비 증 감		전년대비 증 감	
2021	7,044	△418	6,753	95.9	△185	939,654	△42,475	6,958	-
2020	7,462	853	6,938	93.0	863	982,129	11,243	6,958	935
2019	6,609		6,075	91.9		970,886		6,023	

※ 2021~2020년도는 기금운용계획서 기준이며, 2019년도는 결산서 기준임

○ **전기이월금**은 '20년도(66억 3,900만원) 대비 11.4%, 7억 5,400만원이 증가된 73억 9,400만원이고, **이자수입**은 '21년도 정기예금 만기이자분을 반영하여 '20년도 대비 △74.0%, △7,700만원이 감소된 2,700만원을 계획한 것임

○ **소방사업수익**은 '20년도(2억 9,000만원) 보다 △58.6%, △1억 7,000만원 감소된 1억 2,000만원으로 계획한 바,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공제회가 운영하는 소방안전점검사업에 대한 '21년도 예상 수익금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

2) 기금 지출계획

○ '21년도 지출계획은 144억 3,800만원으로 예치금 63억 9,300만원을 포함하여 비용자성사업비(64억 3,900만원), 인력운영비(12억 6,900만원), 기본경비(3억 3,600만원)로 지출계획한 것임

〈표 2-6〉 기금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, %)

항 목	세 부 내 역	2 0 2 1 년 도		2020년도	증 감	증감률	
		금 액	구성비				
합 계		14,438	100.0	14,101	336	2.4	
비용자성 사 업 비	소 계	6,439	44.6	8,045	△1,605	△20.0	
	공 제 사 업 비	소 계	5,683	39.4	7,226	△1,543	△21.4
		공 제 급 여	5,318	36.8	6,849	△1,530	△22.3
		전문가 자문 위탁	37	0.3	39	△2	△5.1
		보 상 심 사 위 원 회	21	0.1	25	△4	△16.0
		소 송 업 무 수 행	174	1.2	164	10	6.1
		손 해 방 지 및 긴급조치 비용지원	25	0.2	41	△16	△39.0
		판 결 금 지 원	50	0.3	50	-	-
		중 앙 회 분 담 금	57	0.4	57	-	-
		예 방 사 업 비	478	3.3	488	△10	△2.0
	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	27	0.2	71	△43	△60.6	
	학 교 폭 력 피 해 지 원	245	1.7	254	△8	△3.1	
	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	3	0.0	3	-	-	
	인 력 운 영 비	소 계	1,269	8.8	1,291	△22	△1.7
		급 여	952	6.6	972	△20	△2.1
수 당		231	1.6	236	△5	△2.1	
4 대 보 험		85	0.6	82	3	3.7	
기본경비	소 계	336	2.3	375	△39	△10.4	
	업 무 추 진 비	23	0.2	23	-	-	
	일 반 운 영 비	312	2.2	351	△39	△11.1	
예 치 금	소 계	6,393	44.3	4,389	2,003	45.6	
	보 유 준 비 금	5,068	35.1	3,128	1,940	62.0	
	이 월 금	1,324	9.2	1,261	63	5.0	

- 교육부의 「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」에 따르면 지출계획중 ‘분야·부문’은 「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이 정하는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에 따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,
 -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‘교육’과 ‘예비비’ 분야의 제한적 세출구조를 적용함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자체적인 세출 예산구조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
 - 교육비특별회계와 분리된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는 동 기금의 성격은 물론 별도의 재무회계처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등 학교안전공제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추진비, 운영비 등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운용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어
 - 예산체계를 사업중심으로 재구조화 하고, 교육부 훈령이 정하는 ‘부문-분야-정책사업-단위사업-세부사업’ 체계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은 재무활동에 해당되는 예치금까지 단 1개의 정책사업(학교안전망 구축)에 포함시켜 운용계획한 바,
 - 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지출항목이 단 1개의 정책사업내에 편성되어 있어 회계연도중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, 기금운용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기금운용의 편의가 극대화될 수 있으나
 - 현행 관련 법령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정한 것은 기금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, 기금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료됨

- 특히, 예치금은 여유재원을 한시적으로 보관하는 지출항목이라는 점에서 개별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으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 편성사례 임에도 불구하고, 서울시교육청의 「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」의 지출항목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보다 행정편의가 우선시된 편성사례로 사료되어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 지출계획중 별도의 정책사업인 재무활동(예치금)이 신설되어야 것으로 판단됨

〈표 2-7〉 기금 세출예산구조

(단위 : 백만원)

부문	정책	단위	세부	사	업	내	역
유아및 초중등교육							
학교안전망 구축							
학교안전망 구축							
공제사업							
공제급여지급, 소송업무 수행, 중앙회 분담금, 판결금지원 등							
예방사업							
학교안전문화 확산 및 홍보, 전산화 사업, 학교 관리자 안전교육 과정 운영 등							
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							
상담및심리치료지원, 상담자문위원회 운영, 자문료, 상담지원제도 홍보							
학교폭력 피해지원							
학교폭력 피해지원, 구상권 행사 경비, 자문료							
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							
법률 자문료							
인적자원운용							
인건비							
보수, 수당							
업무추진비							
업무추진비							
운영비							
일반수용비, 임차료, 공공요금 및 제세, 여비, 회의비, 복리후생비 등							
예비비및기타							
보유준비금							
보유준비금, 임차보증금							
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예치금							
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금 예치금							
학교폭력피해지원금 예치금							
학교폭력피해 지원금 예치금							